

## 몽골 외국인 투자법

2002. 1. 3 개정 ·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외국인의 몽골 투자에 대한 장려, 투자자의 권익과 재산 보호,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 협조를 위해 본 법을 특별 제정한다.

#### 제2조 외국인 투자법에 관하여

- 외국인투자 법규는 헌법, 외국인투자법(이하 ‘투자법’) 및 이들 법규와 부합되는 기타 문건으로 구성된다.
- 몽골이 가입한 국제협약 중 투자법 이외의 기타 규칙이 존재할 경우 국제 협약에 따른다.

#### 제3조 법률 용어

-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 국토 안에 기업을 창업하거나 몽골기업과 합작으로 몽골에 투자한 재산권과 지적 재산을 말한다.
- ‘외국인 투자자’란 몽골에 투자한 외국의 법인과 자연인(몽골에 비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인과 외국에 상주하는 몽골인)을 말한다.
- ‘몽골투자자’는 투자를 진행하는 몽골의 법인과 자연인(몽골 국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인)을 말한다.
- ‘투자계약’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임대, 제품 배분 및 마케팅, 관리, 금융 리스,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투자 협의를 말한다.
- ‘원스탑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의 지사 등록, 영업 활동에 대한 특별 심의; 허가증 및 증서 취득; 통일적인 평가 신청 및 관련서류의 수리; 관련 부문 인가 주선; 투자자에게 정보와 컨설팅 제공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4조 외국인 투자 범위

1. 몽골 법규에서 금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분야는 모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2. 몽골 법규에서 금지하는 제조 지역과 서비스 지역 이외의 지방은 모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 제5조 외국인 투자 형식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투자 할 수 있다.

1. 외화, 투자로 얻은 Tugrik(몽골 화폐)
2.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
3. 지적 재산권과 공업 재산권

## 제6조 외국인 투자 방식

몽골의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

1. 외국인 투자자 단독 기업, 지점 개설
2. 몽골과 합작 기업
3.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법규에 의거 몽골 기업의 지분,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매입
4. 법규, 리스, 제품 배분 계약에 따라 획득한 자연 자원 이용 및 가공 권리
5. 마케팅, 관리 계약
6. 금융 리스, 프랜차이즈 방식의 투자

## 제7조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 매입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몽골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 할 수 있다.

## 제2장 외국인 투자의 보호

### 제8조 외국인 투자의 권리 보장

1.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의 헌법, 투자법과 이에 부합되는 기타 법규 및 몽골이 가입한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2.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불법 몰수를 금지한다.
3.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오직 공공의 이익에 의거하여 법률적

차별이 없이 전액 보상을 조건으로 收用할 수 있다.

4. 몽골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收用재산의 보상은 收用시 혹은 收用 발표시의 평가액으로 하며 완전히 보상한다.
5. 비상상태 혹은 전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해결해 준다.

## 제9조 외국인 투자자 대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의 점유, 이용 및 통제에 대해서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제공한다.

## 제10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1) 재산의 점유, 이용 및 통제권, 그리고 기업에 투입된 자산 중 자본금의 국외 송금 권리
  - (2) 외자 기업 경영 혹은 경영 참여
  - (3) 관련 법률에 의거 권리와 의무의 타인 양도
  - (4) 아래의 수입, 이윤, 금액은 아무런 장애 없이 국외 송금 가능
    - ① 배당소득과 주식 투자 소득
    - ② 재산 매각, 유가증권 소득, 재산권 양도에 따른 수입, 투자 계약 만료와 기업 철수로 얻은 수입
    - ③ 채권, 이자 및 기타 이에 상응한 자금
    - ④ 물수, 收用에 따른 재산의 보상
    - ⑤ 합법적으로 얻은 기타 수입
  - (5) 법률이 부여한 기타 권리
2. 외국인 투자자 의무
  - (1) 몽골의 법규 준수
  - (2)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 설치 관련 계약, 정관 및 투자 계약에서 담당한 의무
  - (3) 자연 환경의 보호와 보전
  - (4) 몽골 국민의 풍속, 습관 존중

## 제3장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의 지사의 영업 활동

### 제11조 외국인 투자 기업

1. 외국인 투자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한다.
2. 외국인투자 기업은 등록일로부터 몽골 법인으로 간주되며, 몽골의 법규에 따라 영업한다.

### 제12조 외국인투자 기업의 인가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인가서는 외국인 투자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 중앙기관(이하 '산업무역부'라 칭함)이 투자자의 신청서에 근거하여 인가 발행한다.
2. 투자자의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투자자의 성명, 주소, 국적
  - (2) 투자 종류와 규모
  - (3) 기업의 형식
  - (4) 투자의 기본 형식
  - (5) 투자 업종, 제조·서비스 사업분야
  - (6) 자금 불입 및 기한
3. 투자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1) 투자자와 관련된 소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 (2)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계약서
  - (3) 외국인 투자 기업 정관
  - (4) 투자자와 관련된 판매, 관리, 생산기술 및 기타 협의 내용
  - (5) 기술 개요
  - (6) 거래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지불 능력 증명서
  - (7) 몽골 자연 자원의 탐사, 발굴, 가공, 토지사용 및 생산과 서비스 품목에 관한 인가서
4.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접수의 60일 내에, 관련 부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산업무역부 장관이 인가한다.
  - (1) 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
  - (2)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
  - (3) 위생에 관한 요구에 부합 여부
  - (4) 생산기술의 평가
5. 국제 기준과 몽골 기준에 따라 본 조 4항의 2, 3에 대한 평가

6. 몽골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 4항의 4에 대한 평가
7.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을 인가하면, 산업무역부는 인가서를 발급한다.
8. 만약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업분야가 몽골 법규와 자연환경, 건강 및 위생, 생산기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근거를 설명한 후 인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9. 본 조항의 투자자의 신청서와 외국인 투자 기업 인가서 양식은 산업무역부에서 정한다.
10.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 자본금, 계약,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산업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무역부는 본 조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문제에 대해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 **제13조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평가**

1.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재산과 지적 재산에 대해 각 투자자가 외화와 Tugrik화로 하되 동일한 원칙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국내 혹은 국외의 자산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몽골은행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Tugrik화를 외화로 환산한다.

### **제14조 외국인 투자의 업무 담당 국가 기관의 권리**

- 一.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중앙 정부 기관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통일된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2. 외국인 투자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3. 향후 외국인 투자 중점 업종과 방향에 대해 건의한다.
- 二.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국가 기관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외국인 투자의 정책, 법규의 실행을 책임진다.
  2.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위한 여건, 가능성, 대외 홍보 활동, 정보제공,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 사업 입찰을 연구한다.
  3.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외국인 투자 통계 정보를 발표한다.
  5.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 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
  6.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의 경영 활동을 중단하거나 정지한다.
  7. 법규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 三. 외국인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본 조 제2항 3의 서비스 제공 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15조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 투자 계약의 등록**

- 一. 외국인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가서를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에 대해 국가 세무 총국은 이들을 등록한다.
- 二.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법인의 지사의 계약서 및 정관 수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국가 기관의 인가 후 국가 세무 총국에 등록한다.
- 三. 투자 계약의 등록은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국가기관의 신청과 공증을 거친 투자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 일 이내에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 **제16조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의 영업 활동 중지**

- 一. 몽골의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활동을 중지한다.
- 二.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영업 활동이 투자법의 제12조 4 항의 하나라도 위반이 입증되면 산업무역부는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을 잠시 혹은 완전히 중지 할 수 있다.

###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철수**

- 一. 영업활동을 중지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14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중앙 정부기관 및 국가세무총국에 철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二. 투자 계약 기간 만료, 투자자의 계약 중지, 몽골법규 위반 시에는 계약의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는 인가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본다.
- 三.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가 철수하는 경우 산업무역부는 이 기업의 설립 인가서를 취소하고 국가 세무 총국에 통지한다.
- 四. 국가세무총국은 투자법 제17조 1항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를 등록에서 삭제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五. 철수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채권 채무 결산 후 투자법 제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과 이윤을 국외 송금할 수 있다.

### **제18조 납세**

- 一.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세법에 따라 납세한다.
- 二.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법인 지사, 투자 계약 실행자에게 부여하는 세제우대와 면제의 문제는 기업소득세법, 세관관세법, 무가가치세법, 특별세법, 토지법 등에 의거 제공한다.

## 제19조 경영 안정 계약

1. 몽골에서 200만 달러 혹은 이에 상당한 Tugrik화로 투자한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투자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인사가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그 투자자와 경영 안정 계약을 할 수 있다.
2. 경영 안정 계약의 양식은 몽골 정부가 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 기한 내에 안정적인 납세 조건과 투자 목적, 투자 한도, 계약 종료 근거, 투자 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최초 투자가 200만 ~ 1000만 달러 혹은 그에 상당한 Tugrik화일 경우 경영 안정 계약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1000만 달러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한 Tugrik화일 경우 경영 안정 계약 기한은 15년으로 한다.
4. 경영 안정 계약을 한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법률에 근거한 파산, 주무부처의 경영 활동 중지, 당사자의 협상에 의한 중지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 만기일 전에 경영 활동을 중지 할 경우, 세제 혜택과 기타 감면 분을 모두 반환한다.

## 제20조 경영 안정 계약 체결

1. 경영 안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세무정책 담당 국가 중앙 기관에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제출한다.
2. 세무정책 담당 정부 인사는 신청서와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14 영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보충설명 내지 명확히 할 내용이 없을 경우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보충설명 내지 명확히 할 내용이 있다면 7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3. 경영 안정 계약은 관련 부처에 통지해야 한다.

## 제21조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토지 사용

1.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토지법에 따라 유상 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은 토지사용의 조건, 기한, 자연환경 보호 및 원상 복구, 토지사용 비, 쌍방 책임을 규정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 (1) 단독투자기업의 경우, 국유토지 사용 계약을 하며, 당해지역 국민 대표회의와 의장단의 허가를 얻어 몽골측 토지소유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한다.
- (2)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국유토지 사용 계약을 하며, 당해지역 국민 대표회의와 의장단의 허가를 얻어 몽골 측 토지 소유자와 합작 기업의 대표가 계약한다.
- (3) 합작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사유토지 사용 계약은 국가 주무부서의 허가 후 토지 소유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대표가 계약한다.
- 4. 본 조 3항 2, 3의 규정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표가 서명한 토지사용 계약에서 발생되는 책임은 합작 쌍방이 투자 비례에 따라 분담한다.
- 5.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토지 사용 기한은 투자기업의 영업 활동 기한으로 한다. 최초 토지 사용 계약은 6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토지 사용 계약 이후 1회 연장 가능하며 연장 가능 기간은 40년이다.
- 6. 토지 사용 계약기간 만료 전에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가 철수하면 토지 사용 계약도 동시에 종료된다.
- 7. 정부는 국가의 특수상황에 따라 토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은 모두 배상한다. 배상액은 토지 변경 혹은 회수시 평가에 따른다.
- 8. 토지 사용으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 자연환경 파손 및 국가 안전에 상반될 경우에는 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한다.

## **제22조 재정, 대출, 통계, 감독**

- 1.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법규에 따라 재정, 세무, 대출, 결산, 외환 결제 등 관련 업무를 한다.
- 2.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법규에 따라 회계, 통계, 결산 업무를 한다.
- 3.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의 재무와 무역 업무는 몽골 법규에 따르며, 국가 재정감독기관 혹은 권리를 부여받은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다. 필요시 외국 감독 기관의 참여를 인정한다.

## **제23조 보험**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 지사는 몽골 법규에 따라 몽골 보험회사

에 보험을 가입한다.

#### 제24조 노동과 사회 보장

1. 외국인 투자 기업은 몽골 국민을 우선 채용한다. 특별히 필요한 고급 전문 기술자는 국외 채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급 전문 인력 채용은 몽골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외국인 투자 기업 근로 몽골 국민의 노동과 사회 보장은 몽골 노동 사회 보험 법규에 따른다.
3. 외국인 투자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의 임금과 기타 수입은 몽골 법규에 따라 납세하고, 납세 후 수입은 국외 송금 할 수 있다.

#### 제4장 기타

외국투자자와 몽골투자자간, 외국투자자와 몽골 법인 및 자연인간에 발생된 분쟁에 대해, 몽골이 참여한 국제협약 또는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몽골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제25조 본법의 효력 발생

본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施行한다.

2002년 1월 3일, 개정하였다.

선임연구원 김주영(☎3779-6647)

E-mail : jykim@koreaexim.go.kr